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 소개

2 0 2 4 . 0 6 . 2 6





목 차

-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개
- 2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 사업
- 3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 설립목적**
 -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지원사업 수행을 통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

- 주요연혁**
 - '09. 1 : (사)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설립
 - '10. 1 : 기타공공기관 지정
 - '15. 12 : (재)한국지식재산보호원 설립
 - '20. 8 : 특수법인으로 변경(발명진흥법 제 55조의2)

- 주요사업**
 -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K-브랜드 보호 기반구축, 사회적 약자 지재권 보호 지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 등

- 조직구성**
 - 2본부 2센터 10실 (176명)

01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재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원

02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전국민 대상 지식재산
보호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03

사회적 약자 지재권 보호 지원

지재권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직접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

04

K-브랜드 보호 기반구축

상표브로커 피해정보
수집,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대리신고

05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산업재산권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양 당사간의 상호합의로
원만한 분쟁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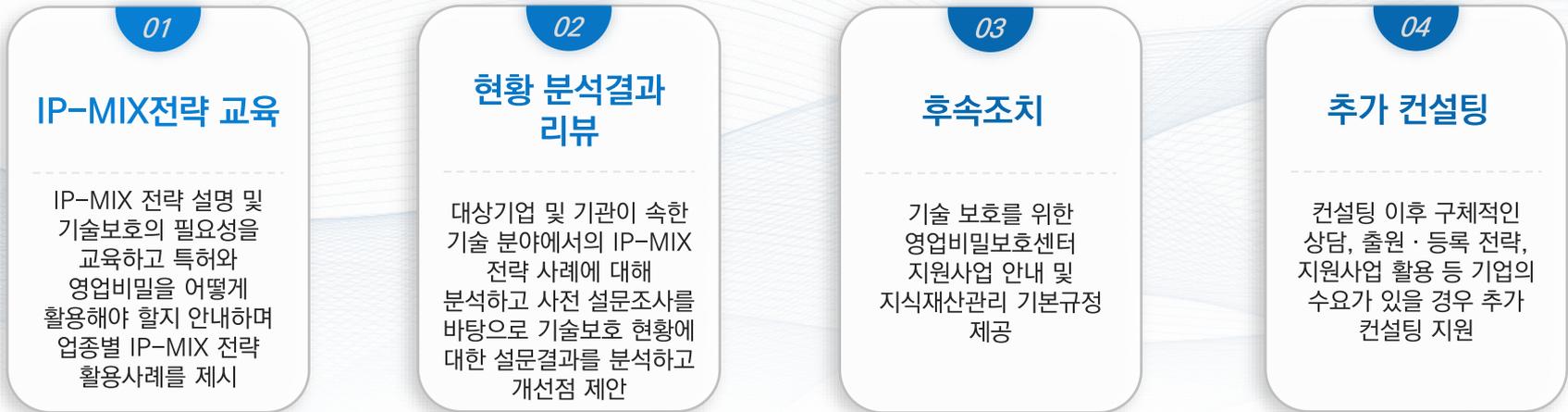
침해 발생	영업비밀 특징	영업비밀 증명	침해행위 입증
개 요	침해된 권리를 특정	영업비밀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증명
내 용	법원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소장·준비서면(민사), 공소장(형사)에 글로써 해당정보의 특징을 기술하는 것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증명하는 것	<p>민사 부정한 취득, 사용, 공개</p> <p>형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취득, 사용, 누설하는 행위</p>
지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시스템 보급 원본증명서비스 제공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기초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시스템 보급 원본증명서비스 제공 영업비밀 관리체계 컨설팅(기초/심화 컨설팅)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 증거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출분쟁 법률자문 제공 영업비밀 유출 디지털 포렌식

→ 형사처벌
→ 민사적 구제

I 사업개요

특허와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기술보호 강화 및 체계 구축 지원

II 지원내용



III 지원대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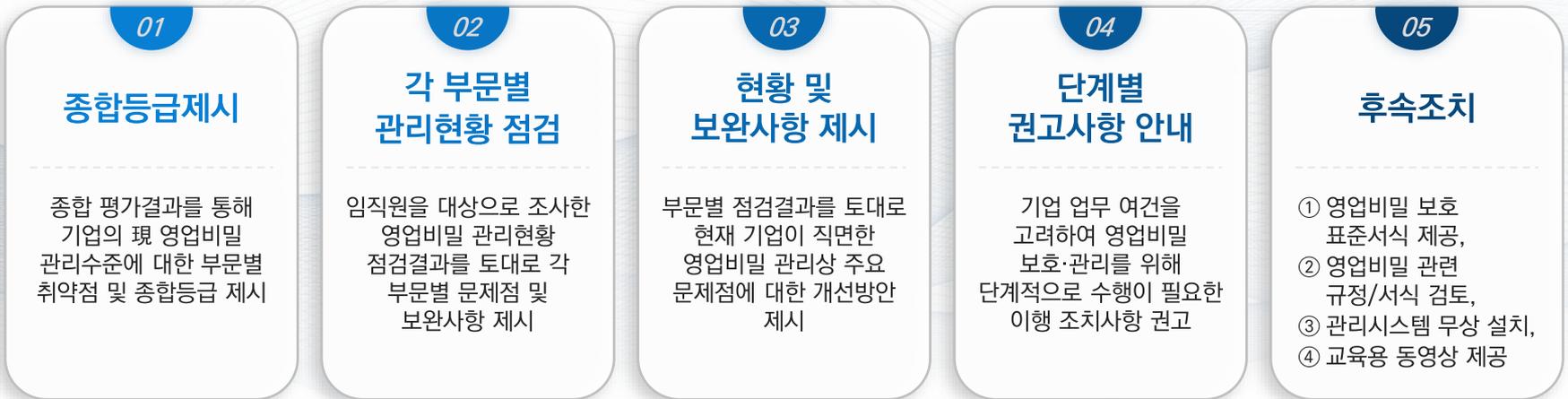
IV 지원절차



I 사업개요

영업비밀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센터전문가)가 기업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당 기업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제시

I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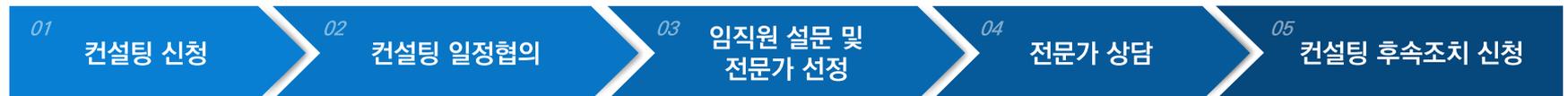


I 지원대상

창업기업*(우선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자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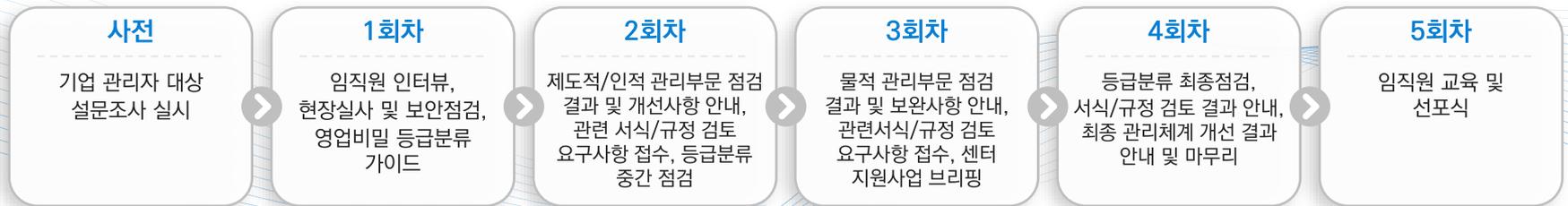
I 지원절차



사업개요

영업비밀 전문가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개선 실무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업 규모, 업종, 주요 취급정보 등을 고려한 기업별 여건에 맞는 관리체계 도입 및 개선 지원

지원내용*중견기업 기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창업기업을 제외하고 7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 중 영업비밀 관리체계 미구축 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은 소기업 기준 적용

기업규모별 지원형태

기업 규모	방문일수	컨설팅 비용	
		정부지원 비율	기업부담 비율
소기업	3일	80%	20%(현물)
중기업	4일	70%	30%(현금+현물)
중견기업	5일	50%	50%(현금+현물)

지원절차



I 시스템 개요

사내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 전자문서를 등록·보관하고 비밀등급 부여, 취급인력 및 권한설정, 취급기록 확인, 이력관리, 서약서 관리 등 영업비밀 관리의 필수적인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

I 지원내용

01 비밀문서 관리	영업비밀 자료 등록·수정·반출 가능 (원본증명서비스 연계)	03 인력 관리	시스템 내 이용자·관리자 등록, 책임자 지정, 서약서 징구 및 관리
02 접근권한 관리	이용자별 권한 설정 및 이용그룹 구성, 비밀문서 보관함 별 책임자 지정	04 이력·통계 관리	이용자별 영업비밀 자료 취급이력 조회, 등록·열람·수정·반출 통계이력 확인

I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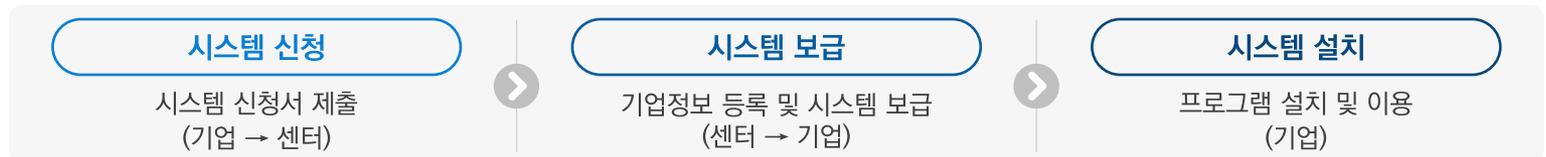
일반이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3개월체험: 제한없음*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전자문서 관리체계와 시스템 개발 시 참고 가능한 관리시스템을 3개월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

I 특징점

- **비용 절감** : 서버, 상용S/W 구입 등 자체 시스템 구축비용 無
- **비밀관리성 입증** : 영업비밀 자료 유출 시 관련 사실 증빙을 위한 증거 확보
- **임직원 인식 제고** : 자사 영업비밀에 대한 잠재적 유출심리 억제

I 보급 절차



I 비용

영업비밀 보호센터 지원사업	이용실적 有 기업	무상
	이용실적 無 기업	가입비 10만원, ※ 원본증명서비스 이용포인트(10만포인트)로 환급

*3개월체험 이용은 가입비 면제

사업개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발생 시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지원

※ 최초 자문 후 3년 경과 후 추가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 예비창업자(개인) 등

지원절차

※ 피해기업이 영업비밀 전문 변호사 리스트를 통해 전문가를 직접 선택하여 상담 진행



I 사업개요

영업비밀 유출피해 기업의 정보기기를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조사 및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신속한 민·형사적 피해구제 지원

I 지원내용

디지털 포렌식 지원범위

 영업비밀 유출 피해 상담	영업비밀 유출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가능성 자문, 디지털포렌식 지원 가능 범위 협의 등
 디지털 증거 수집	적법절차에 따라 디지털 증거 수집, 현장 수집 또는 포렌식 분석실에서 접수
 디지털 증거 분석	영업비밀 유출 피해 입증과 관련된 행위 및 자료에 대한 분석
 디지털포렌식 보고서 제공	수집·분석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공

디지털 포렌식 대상

업무용 컴퓨터

- 연결된 저장장치
- 이메일
- 웹브라우저
- 삭제파일 복구



저장 매체

- USB
- 외장하드디스크
- SD카드



스마트폰

- 연락처
- 메시지
- 통화내역
- SNS내역



기타 디지털기기

- 서버시스템
- 데이터베이스
- CC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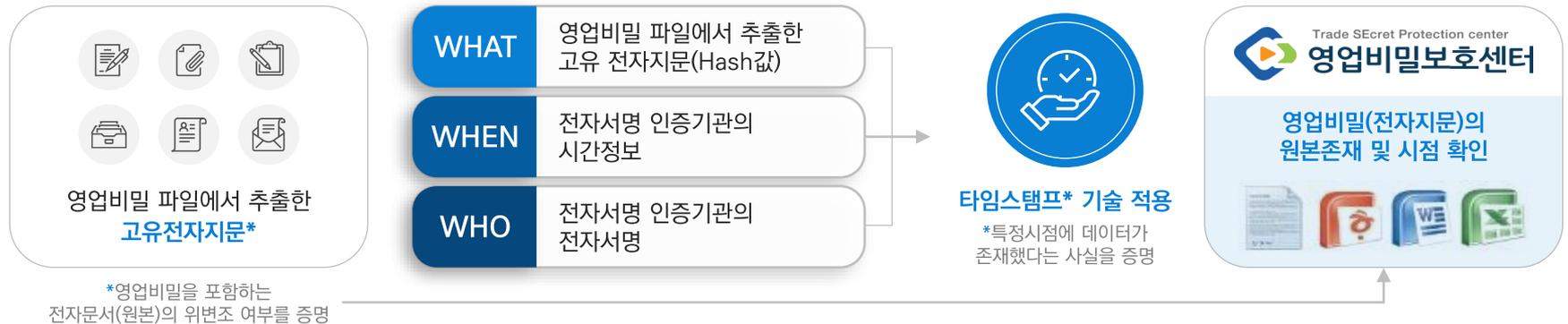
I 지원대상

영업비밀 유출피해가 의심되어 증거 확보가 필요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영업비밀 유출사건당 최대 10개 기기 한도 내 분석지원(신청기업이 소유권을 확보한 디지털 기기에 한정)

서비스 개요

영업비밀 내용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분쟁 발생 시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 원본 보유자 및 보유시점을 입증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전자문서 파일에서 고유한 전자지문(Hash 값)을 추출하고 공동인증서의 전자서명값과 함께 시점을 확인(Timestamp)하여 영업비밀보호센터에 등록

*원본파일이 제출되지 않고 전자지문값만을 추출하기 때문에 전자파일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음

법적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영업비밀 원본증명)

-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

※ 상대방에게 반대 사실 증명에 대한 입증책임 부여(반증이 없는 한 사실로써 추정)

원본증명서비스 특징점

- 원본 제출 없이 전자지문만을 이용하여 비밀정보의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
- 다양한 형태의 전자파일(워드, 한글, 이미지, 캐드 파일, 동영상 등) 지원
- 온라인 상으로(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등)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쉽게 이용 가능

원본증명서비스 기대효과

01



영업비밀 보호 관점

보안 인식제고

사내외에 원본증명 등록 사실 고지를 통하여 자사 영업비밀 유출 시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와 유출심리 억제 효과 발생

유출방지 효과

연구개발 정보, 기술 노하우 및 고객정보 등 자사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경업금지약정 체결과 함께 현실적인 영업비밀 유출 방지수단으로 작용

02



법적분쟁대비 관점

경진대회 출품작 아이디어 보호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사기업 등에서 주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응모하는 경우 제안 아이디어 또는 출품작의 권리자임을 입증

특허분쟁 대비

자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중인 기술에 대해 타사에서 특허 침해소송 제기 시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따른 무상통상실시권 주장 증빙자료로 활용

모인 특허출원 대비

자사에서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제3자에게 유출되어 모인(횡령) 특허출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 주장을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

서비스 이용건수

약20만 1천 건, 중소기업 약 7,200개사 ('23년 12월 기준)

– 국가 지식재산 보호 중추기관, KOIPA –

감사합니다

